

● 제298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1673)

2020. 12. 1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73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가. 제안자 :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외 42명)

나. 제출일자 : 2020년 7월 13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7월 14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금융소외계층’을 ‘금융취약계층’으로 함 (안 제1조 및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나.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 서울시는 2012년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 ‘제1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3~2017)’과 2017년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등 2차례의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인권을 시정의 기본이념으로 받아들여 인권도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 인권기본 조례’는 서울시의 인권상황과 주요 인권의제가 변화됨에 따라 개정을 거듭해 왔음. 그 가운데 인권영향평가 제도는 서울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016년도 6차 개정사항에 포함된 내용이며, 2019년부터는 인권영향팀을 신설하며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바 있음.

「서울시 인권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도시”라 함은 모든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행복한 도시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인권부서”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

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영향평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서울시에서는 2018년 실시한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후’인권영향평가 점검표를 개발하고, 2019년 서울시의 자치법규 860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영역별로 서울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
- 전수조사를 위한 점검표는 ‘차별 및 인권 침해 예방’, ‘기본권 보장 및 권리의 구제’, ‘시민참여보장’ 등 3개 분야 9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평가분야	평가항목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1) 차별적 용어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2)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에 따른 차별
기본권 보장 및 권리의 구제	3) 입장 및 이용 제한 조항에 따른 문화권 제약
	4)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
	5) 반환권 제약 (공공시설 이용 시 반환조항 미비)
	6) 구제권 제약 (과태료 부과징수 법적 근거, 구제절차)
시민참여 보장	7) 개인정보보호권 보장
	8)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권 및 알권리 보장 여부
	9)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 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

다. 세부 조례내용 검토 : ‘소외계층’과 ‘취약계층’

- 본 조례에서는 ‘금융소외계층’이라는 표현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 및 해당지역에 사회적 낙인을 야기할 수 있는 차별적 표현으로, ‘금융취약계층’이라는 표현으로 개선할 것이 권고되었음.
- 해당 용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쉬운 공공언어 쓰기 길잡이』에서 지정한 사용자제 권고 용어임.
 - 소외계층은 영어의 Disadvantaged Group 또는 Marginalized Group 등을 번역하여 사용된 용어로 최근에는 차별적 의미가 강하다는 의미에서 취약계층 (Vulnerable Group)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
 -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사회·경제적·신체적 및 기타 조건으로 인하여 외적 개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동등한 혜택을 제공받을 기회로부터 배제되기 쉬운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 이 역시 차별적 느낌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나 대안 용어가 없기 때문에 소외계층 대신에 취약계층을 사용하거나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되었음.
- 현재 「소비자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관광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도서관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러닝(전자학습) 산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교육지원법」 등의 법률에서는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¹⁾

1) 김성천(2014), 취약소비자 보호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 이 가운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을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음.

라. 조례 개정안 관련 집행부 의견

-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에 따른 단순 용어 변경으로 쟁점사항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다만, 취약계층 범위(제1조)를 법인세법 규칙에 따르도록 한정 할 경우 서비스 대상이 축소되고 적격여부 확인 절차로 시간이 소요되어 경제적 위기를 겪는 시민에 신속한 지원이 어려우므로 해당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함.

3

종합의견

- 조례와 같이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 가운데에서도 차별성과 권위적인 성격을 가지는 용어, 일반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차별용어 또는 권위적 용어로 분류할 수 있는 용어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이것은 법령이라는 영역상의 특징일 수 있지만, 용어의 어원과 의미에 관한 이해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할 것임.²⁾
- 조례와 같은 법령은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만큼,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과 시대에 적합해야 함. 또한, 이러

2) 강현철 외(2015),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 및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한 측면에서 법령용어는 국민들의 의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 또한 법령에 사용되는 언어는 널리 사용되는 언어일지라도 권위적·비민주적이거나 성차별적인 측면이 있다면 적절한 다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이 있을 것임.
- 다만,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상위법의 준용규정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는 집행부 의견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